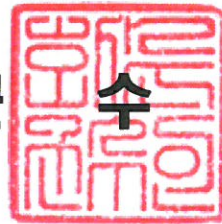


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

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·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.

2020. 4. 20.

화 순 군 수



1.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

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·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.

2.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

구 분	초지 소재지	지목	지적면적(㎡)	해제면적(㎡)	해 제 사 유
전라남도 화순군	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89-8	목장용 지	3,513	3,513	초지법 제24조2(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)

3.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

가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나. 도서열람 : 이해관계인은 화순군 농업정책과(☎061-379-3653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화순 장전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 및 39조의 규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『장전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,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4. 6.

화 순 군 수



1. 사업의 목적 : 주민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이 높은 장전마을 조성
화순군을 대표하는 생태수변거점 공간 장전마을 조성

2. 사업내용 및 구역

가. 사업명 : 장전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

나. 위치 :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장전1리 장전마을 일원

다. 주요사업

－ 기초생활기반 : 마을회관 리모델링

－ 지역경관개선 : 빨래터 정비, 뚝방 반딧불 로드 조성, 마을입구
경관개선

－ 지역역량강화 : 교육, 컨설팅, 부대비용

라. 면적 : 313ha(대지 3.3ha 농경지 37ha, 임야 245ha,
기타 27.7ha)

마. 가구·인구 : 53가구, 98명

3. 사업비 필요금액 : 500백만원 (※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전환)

4. 사업 예정 기간 : 2020년 ~ 2021년(2년간)

5. 사업의 효과

가.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장전마을 조성

나. 화순군을 대표하는 생태수변거점 공간 장전마을 조성

다.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

6. 사업시행자

가. 성 명 : 화순군수

나. 주 소 :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
7. 세부사업계획 : 관련서류 열람

화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 (☎ 061-379-3773)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폐문부재, 이사감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04. 02. ~ 2020. 04. 17.(15일간)
3. 대 상 자 : 1명

등록번호	소유자	송달 주소	반송일자	반송사유	위반내용	부과예정금액
29소7405	유한회사 대**업	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***번지*호	2020.03.19.	수취인 불명	자동차 변경등록 미필	300,000원

4. 공시송달내용

- 가.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순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과태료 납부기한(2020.04.03까지) 경과 시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.
- 다. 기타 문의사항 :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담당 (전화 061-379-3461)

2020. 04. 02.

화 순 군 수

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(자동차검사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(검사기간 경과와 통지)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, 사전안내서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안내엽서 및 「질서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수취인불명, 반송함투함, 보관기간경과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0. 4. 7. ~ 2020. 4. 22(15일간)

2. 대 상 자 : 불임첨부

3. 송달내용 : 자동차, 건설기계 정기검사(사전, 유효경과)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

4. 문 의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 (전화 061-379-3462)

5. 유의사항

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6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(번호판 영치 등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4. 7.

화 순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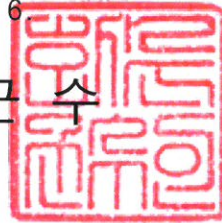


주·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수취인불명,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4. 6

화 순 군 수



1. 공 고 대 상 : 주·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: 별첨
 2. 공 고 기 한(의견제출기한) : 2020.04.06.~2020.05.01.(25일)
 3. 의 견 제 출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(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☎061-379-3785)
 4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(전자문서포함), 구두진술(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)
 5. 기타 안내
 -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% 감경 되므로,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%가 감경 됩니다.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,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.
- 1)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- 2)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~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- 5) 미성년자

※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 061-379-378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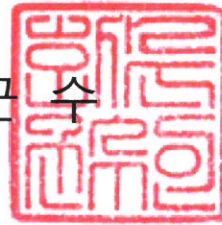
붙임 :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.

주·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(수시분) 부과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수취인불명,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4. 6.

화 순 군 수



1. 공 고 내 용 : 주·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(수시분)부과 반송분 공고
2. 공 고 기 한 : 2020.04.06.~2020.04.21.(15일)
3. 공 고 대 상 : 2020.03.01.~2020.03.31.반송분(3월) / 내역 별첨
4. 문 의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061-379-3785, 3786, 3788)
5. 기타 안내
 - 불법 주·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061-379-3788)에서 고지서를 발급(가상계좌납부 가능)받아 시중은행,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독촉고지의 발부 후 독촉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기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(자동차등)이 압류됨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(수시분) 부과 반송내역 1부.